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2. 15.
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. 2. 1. 한선미 의원 외 11인

나. 회부일자: 2023. 2. 6.

다. 상정일자: 제260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(2023. 2. 15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한선미 의원

가. 제안이유

마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발생의 방지 및 저감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여,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, 안 제2조)

2)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 (안 제3조, 안 제4조)

3)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지원 사업 (안 제5조, 안 제6조)

4) 지원 사업의 지도 · 감독 (안 제7조)

3. 검토의견 [신준호 전문위원]

가. 조례 제정 배경

○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악취 발생 저감 및 관리 활동을 위한 생활악취 발생시설의 기술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음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○ 조례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7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생활악취 발생 방지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1조~안 제5조)

○ 구청장은 생활악취검사 및 기술진단,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6조)

다. 종합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29조[1] 및 「악취방지법」 제3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등 생활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들에게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.

○ 현재 마포구는 「악취방지법」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령상 악취배출시설은 없으며 관내 악취의 대부분은 악취배출시설 외에서 발생하고 있음.

○ <표 1>에서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별 악취배출사업장 현황으로서 마포구는 폐수처리시설 사업장이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음.

---

1) 제29조(환경보전시설의 설치·관리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녹지대(綠地帶), 폐수·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, 소음·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,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·복원을 위한 시설, 오염된 토양·지하수의 정화를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·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표 1. 업종별 악취배출사업장 현황>

업종별 / 기관별	계	출판 및 인쇄 관련 시설	조립금속제품·기계·기기·장비·운송장비·가구 및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	폐수처리시설	폐기물 보관·처리시설
계	203	4	11	187	1
마포구	203	4	11	187	1

○ 관내 생활악취 발생 업종 현황은 동별 음식점 및 인쇄소, 세탁소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<표 2>와 같음.

< 표 2. 2019년 동별 생활악취 발생시설 현황(2023.2월 현재)>[2)]

구분	식품접객업소					세탁업	인쇄사
	일반음식점	유흥주점영업	단란주점	휴게음식점	집단급식소		
총계	**8,255**	**47**	**63**	**2,121**	**220**	**149**	**180**
공덕동	476	4	5	138	18	17	26
대흥동	332	11	6	115	17	7	8
도화동	431	14	3	77	10	16	11
망원1동	630	-	3	186	6	9	4
망원2동	79	-	2	22	4	10	8
상암동	680	-	-	217	35	9	8
서강동	498	-	-	104	14	6	11
서교동	2,509	12	27	501	13	10	60
성산1동	347	-	1	122	18	13	8
성산2동	115	-	-	76	14	7	2
신수동	168	-	3	59	10	10	7
아현동	256	2	-	85	20	6	-
연남동	791	-	3	196	7	5	10
염리동	118	-	-	38	9	9	6
용강동	282	4	5	62	15	7	1
합정동	543	-	5	123	10	8	10

2) 위생과, 문화예술과 자료

○ 이 같은 상황에서 쾌적한 정주환경에 대한 구민의 욕구 증가로 매년 악취 배출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.

○ 하지만, 「악취방지법」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중 시·도 광역단체 및 대도시의 단체장만이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정하였기에 적극행정 차원에서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○ 향후,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생활악취 판단 기준 등을 수립하고 생활악취 배출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음.

[관 계 법 령]

「악취방지법」

제3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

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하며,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·연구,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·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, 동물의 사육,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